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박대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031

발의연월일 : 2026. 5. 20.

발 의 자 : 박대출・윤영석・김성원
권영진・김용태・배준영
박수영・이인선・김정재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, 기금관리주체, 금융지주회사,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(이하 “지배주주등”이라 함)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・인출・편입・현물출자・주식이전・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,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.

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.

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17조제1항제2호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7조제2항제2호 중 “2026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·인출·편입·현물출자·주식이전·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. 1. (생 략) 2. 제1항제5호, 제16호, 제23호 및 제24호: 2026년 12월 31일 ③·④ (생 략)	제117조(증권거래세의 면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 ----------2029년 12월 31일 ③·④ (현행과 같음)